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살예방 및 생명<del>존중문</del>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0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·복 지 위 원 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 숙

#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118

나. 발 의 자: 최동철 의원 외 6명

다. 발의일자: 2023년 10월 1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#### 2. 제안이유

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, 자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 이와 더불어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자살 실태 및 통계, 분석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- 나.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- 다.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(안 제13조)
- 라.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(안 제13조의2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, 제11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편성

다. 해당부서: 건강관리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0. 16. ~ 10. 20.) 결과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취지

○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,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자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**안 제6조제3항에서**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<u>자살 실태 및 통계·분석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</u>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
- **안 제7조에서**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·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
  - 위촉직 위원 중 <u>"사회복지학·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</u>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"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, 위원회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

- **안 제13조에서는** <u>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</u>하였는데, 기존의 심리상담, 상담치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<u>진료비 등의</u> 지원과 방문상담 시행에 관한 근거도 신설하였고
- **안 제13조2에서는**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되는 <u>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</u>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음

**제13조의2(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)** ①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<u>자조(自助)</u> 모임<sup>1)</sup>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<u>서비스의 종류와</u> 그 이용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
#### 다. 종합의견

- **통계청** '2022년 사망원인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 1만 2,906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으며,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1위 수준<sup>2</sup>)으로 나타나
-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자살 예방부터 고위험군 선제 발굴·지원,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고

[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(심리학용어사전)]

2)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(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)을 비교: 한국 22.6명, OECD 평균 자살률은 10.6명

<sup>1)</sup> 자조 모임: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을 말하며, 전문적 관계에서 잘 표출되지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. 자조 모임 구성원들은 동료애를 발휘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낙인에 의한 은둔을 방지할 수 있고 주거, 보건, 고용 기회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-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'2021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'³)에 따르면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42.8%(343명)는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, 지인(친구, 직장동료 등)을 잃은 자살 유족으로
  -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83.3%(793명)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이 중 60.9%(580명)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
  - 자살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임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・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고위험군과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여,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 의의가 타당하며,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

<sup>3)</sup>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7년간(2015~2021)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. 심리부검(Psychological Autopsy)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 [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"자살 심리부검,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"]

### 참고

#### 관계법령

#### 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자살실태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성별·나이·학력,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- 자살에 관한 생각,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
  에 관한 사항
- 3. 신문・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 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, 결과발표,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